

2020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및 체력시험 시행계획 공고

「2020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와 체력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필기시험 합격자

가. 합격인원 : 898명 ※ 합격자 명단(붙임1)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응시번호만 발표함

임용기관	채용분야		선발인원	접수인원	합격인원	합격선	비고	
계			533	4,436	898			
경상남도	소 계		433	3,764	736			
	공개경쟁	일반소방	남	260	2,112	390	373.59	조정점수
			여	20	270	30	410.92	조정점수
	경력경쟁	구 조		12	96	25	66.66	
		구 급	남	48	279	97	68.33	
			여	12	257	24	91.66	
		소방관련학과	남	20	301	42	88.33	
			여	5	56	11	90.00	
		응급구조학과	남	20	121	43	73.33	
			여	5	60	13	78.33	
		의무소방전역		25	194	54	73.33	
		건축		5	15	5	63.33	
		언론공보		1	3	2	65.00	

임용기관	채용분야		선발인원	접수인원	합격인원	합격선	비고	
창원시	소 계		100	672	162			
	공개경쟁	일반소방	남	45	341	68	346.01	조정점수
			여	5	61	8	397.19	조정점수
	경력경쟁	구 조		15	79	31	61.66	
		구 급	남	16	47	22	60.00	
			여	2	37	4	91.66	
		소방관련학과	남	4	32	8	80.00	
			여	1	5	2	66.66	
		응급구조학과	남	4	11	5	63.33	
			여	1	8	2	71.66	
		건 축		4	20	6	65.00	
		선박 항해사		1	9	1	85.00	
		선박 기관사		2	22	5	70.00	

- 나. 성적열람 : 불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필기성적은 최종합격자 공고 이후 확인가능
 - 열람기간 : 2020. 7. 16.(목) 10:00 ~ 7. 29.(수) 18:00
 - 열람장소 : 자치단체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 (<http://local.gosi.go.kr>)

2 체력시험 일시 및 장소

- 가. 응시대상 : 898명(제1차 필기시험 합격자 전원)
 나. 시험장소 : 김해체육관(경남 김해시 가야로 245, 구산동) ☎ 055-320-0432
 다. 시험일정 : 2020. 7. 28.(화) ~ 8. 5.(수) / 토·일 제외 ※ 조편성은 당일 안내
 라. 입장시간 : 시험당일 08:10 ~ 08:40 ※ 08:40 이후 출입문 폐쇄
 - 시간 내에 미입장 시 응시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마. 세부일정

08:10~08:40	08:40~09:00	09:00~09:20	09:20~12:00	12:00~13:00	13:00~13:20	13:20~18:00	개인별 종료 후
응시자 입 장	⇒ 응시자 등 록	⇒ 도핑테스트 추첨 및 설명	⇒ 5개 종목* 실 시	⇒ (중 식) ※ 미제공	⇒ 응시자 입 장	⇒ 왕복오래 달리기	⇒ 도핑테스트 ※ 대상자만 해당

* 악력, 배근력, 앓아뉘고립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세부일정은 시험당일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중식이후 지정된 시간 내에 시험장소에 입장해야 하며(13:20 이후 출입문 폐쇄)
 미입장 시 무단이탈로 간주하고 불합격 처리 함

마. 응시번호별 시험일자

날짜	차수	임용기관	채용분야	성별	응시번호	인원	비고
2020-07-28	1일차	경상남도	일반소방	남	11110006 ~ 11110754	130	130
2020-07-29	2일차	경상남도	일반소방	남	11110755 ~ 11111416	130	130
2020-07-30	3일차	경상남도	일반소방	남	11111420 ~ 11112104	130	130
2020-07-31	4일차	경상남도	구조	남	13110008 ~ 13110091	25	140
			건축	남	24110008 ~ 24110015	4	
		창원시	일반소방	남	11120007 ~ 11120338	68	
			구조	남	13120005 ~ 13120076	31	
			건축	남	24120006 ~ 24120015	6	
			선박항해사	남	27120003	1	
선박기관사	남	28120005 ~ 28120020	5				
2020-08-03	5일차	경상남도	구급	남	14110004 ~ 14110277	97	140
			응급구조학과	남	18110001 ~ 18110117	43	
2020-08-04	6일차	경상남도	소방관련학과	남	16110002 ~ 16110301	42	132
			의무소방전역	남	20110001 ~ 20110193	54	
			언론공보	남	26110002	1	
		창원시	구급	남	14120001 ~ 14120045	22	
			소방관련학과	남	16120006 ~ 16120030	8	
			응급구조학과	남	18120002 ~ 18120011	5	
2020-08-05	7일차	경상남도	일반소방	여	12110006 ~ 12110264	30	96
			구급	여	15110002 ~ 15110241	24	
			소방관련학과	여	17110005 ~ 17110051	11	
			응급구조학과	여	19110001 ~ 19110048	13	
			건축	여	24110006	1	
			언론공보	여	26110003	1	
		창원시	일반소방	여	12120001 ~ 12120028	8	
			구급	여	15120005 ~ 15120034	4	
			소방관련학과	여	17120001 ~ 17120004	2	
			응급구조학과	여	19120002 ~ 19120003	2	

3 체력시험 실시방법

가. 시험종목 및 평가점수 : 6개 종목* 각 10점(총 60점) (붙임3)

* 약력, 배근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나. 평가방법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에 따름 (붙임4)

다. 종목별 채점기준

종 목	채점기준
약력,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값에서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배근력, 제자리멀리뛰기	측정값에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 버림
윗몸일으키기, 왕복오래달리기	횟수 측정

라. 합격자 결정 : 6개 종목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총점의 50%(60점 중 **3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함

마. 체력시험 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 2020. 8. 12.(수)

- 발표장소 : 경상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란

※ 신체검사 및 서류전형 등 향후 시험일정은 체력시험 합격자 공고 시 안내함

4 응시자 준비물 등

가. 응시자 준비물 : 신분증, 응시표, 운동복, 운동화(실내용), **마스크**

- 신분증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간만료전의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하나를 지참 ※ 학생증, 공무원증, 자격수첩 등은 미인정

- **개명한 응시자**는 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법원의 개명 판결문 등)를 반드시 지참해야 함

- 신분증 미소지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자 신분확인이 불가하여 당해 시험이 무효처리 됨

- **응시자 도핑테스트 검사 동의서(붙임5-3)는 사전 작성하여 시험일에 제출**

나. 기타 음료수, 수건, 휴지 등 개인물품은 응시자 본인이 준비해야 함

※ 응시자를 위한 별도의 음료 및 물품 등을 제공(비치)하지 않음

5

도핑테스트

가. 실시목적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응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및 사용은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체력시험 당일 도핑테스트를 실시함 (붙임5-1)

나. 실시개요

- 채취대상 : 당일 응시대상 인원의 6% 이내에서 무작위로 추첨
 - ※ 불합격자와 중도포기자도 시험당일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추첨하여 선정된 경우 반드시 도핑테스트를 받아야 하며, 임의퇴장 시 부정행위자로 간주됨
- 검사방법 : 소변시료 채취 후 전문기관 분석의뢰
- 금지약물 : 동화작용제 7종 및 그 대사물질, 이노제 3종, 흥분제 3종, 마약류 11종 (붙임5-2)
 - ※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2019.1.8.)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채취시기 : 당일 체력시험 종료 후

다. 유의사항

- 도핑테스트 대상자로 선정된 응시자가 검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는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해당 시험에 대하여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도핑테스트 대상자는 체력시험 시작 전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며, 시험 응시자 전원은 시험 당일 응시자 등록 시 시험감독관 안내에 따라 도핑테스트 관련 동의서(금지약물 복용 등 확인절차)를 작성·제출해야 하고, 미제출 시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붙임5-3)
- 만약 1차 시료의 도핑테스트 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응시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7일 이내에 붙임의 서식에 따라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 등 의견을 제출하거나 2차 시료의 분석을 요청할 수 있음 (붙임5-4)
-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합격하였더라도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6

응시자 유의사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가. 원활하고 안전한 시험 진행을 위해 시험장은 시험전일 및 시험종료 후 철저한 소독관리를 할 예정이며, 응시자는 아래의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나.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단, 체력시험 최종일 전(8.4.(목)) 완치판정을 받은 응시자는 응시 가능

다. 응시자 중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중인 자**는 다른 응시자와 함께 응시가 불가 하며, 사전신고 절차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한해 **별도의 시험일에 응시 가능**

※ 사전 신청 기간 : 7. 20.(월) 09:00 ~ 응시자 본인의 시험 예정일 전일 12:00

※ 자가격리자 사전신청 방법

- 유선 신청(경상남도 소방행정과, ☎ 055-211-5316) 후 신청서(붙임참조) 및 격리통지서 사본 이메일(kimkiwon@korea.kr) 제출

※ 자가격리 사전신고 응시자의 별도 응시 방법 등은 개별 안내 예정

라.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 출입 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험장 내에서도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여야 하며, 신분 확인 및 일부 종목 평가 시 감독관의 지시에 의해서만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음

마. 발열체크 시 **이상 증상**(37.5℃ 이상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응시자의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문진표를 작성 후 당일 **마지막 순번으로 조정하여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음

바. 시험 당일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이 확인된 응시자 중 해외 방문력, 확진자 접촉여부 등에 따라 정상적인 시험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컨디션(condition) 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을 위해 **시험 당일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을 전면 통제**함

아. 위생관리를 위하여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람

- 자. 응시자는 안전한 시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붙임6-1)에 따라 시험 당일 진행되는 안전대책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람
- 차. 응시자는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증상 등을 모니터링 하여 증상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람, 자가격리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시험시행 기관(경상남도 소방행정과 ☎ 055-211-5316)으로 통보**해 주시기 바람

[일반사항]

- 가. 본 시험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경상남도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공고내용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나. 체력시험은 우천, 폭설, 강풍 등에도 예정대로 시행 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험장소 등을 공지함
- 다. 응시자는 **시험일시, 장소, 교통편 및 이동 소요시간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공지사항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 라. 응시자 개인별 체력시험 일정은 천재지변 등을 제외하고 변경 할 수 없음
- 마. 응시자는 응시번호별 **지정된 시험일자**에 **오전 8시40분까지** 입장하여 응시자별 지정된 좌석에 착석
 - ※ **오전 8시40분 이후에는 입실(입장) 및 시험응시 불가**
- 바. 시험 일정상 **중식시간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체육관 외부로 외출이 가능 하지만, 반드시 시험 시행본부에서 **지정하는 시간까지 입실(입장)**해야 함
 - ※ 중식은 별도 제공되지 않으며, 지정된 시간 이후에는 입실(입장) 및 시험응시 불가
- 사. 체력시험 진행 중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귀가 하거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체력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 함
 - ※ 부상 등의 사유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다음 종목에 응시하지 못하고 귀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전까지 취득한 점수 인정(응시포기서 작성 및 핸드링 반납)
- 아. 체력시험 당일 응시자에게 필요한 음료수 등 개인물품은 본인이 지참하여야 하며 시험장소 내에 비치된 물품 등은 일절 제공하지 않음

- 자. **공용으로 지급되는 물품 이외에 개인 장갑, 파우더 등의 사용은 금지** 되고, 징 또는 스티드가 있는 신발 등 체력시험에 지대한 영향이 있는 물품은 착용할 수 없음
- 차. 응시자 이외에는 시험장 출입이 절대 불가하며, **휴대폰, 카메라 등 전자기기 및 통신장비를 이용하여 시험과 관련된 장면을 촬영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을 일절 금지함**
- 카. 긴장된 상태에서 갑작스런 체력시험 응시로 각종 부상의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체력시험 실시 전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기 바라며, 부상 등으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불합격하는 경우 체력시험 연기 또는 추가 시행은 불가하므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람
- 타. 응시자 귀책사유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설치된 시설물의 파손으로 인한 배상 등에 대하여 시험실시기관에서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음
- 파. 본 공고문 안내사항 및 시험당일 응시자 교육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응시자 또는 시험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는 응시자의 경우 해당 시험에 대하여 정지 또는 무효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음

- 붙임
1.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 1부(별첨)
 2. 체력시험 장소 1부
 3.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1부
 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1부
 5. 도핑테스트 관련자료
 - 5-1.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도핑테스트 안내문 1부
 - 5-2.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1부
 - 5-3. 응시자 대상 검사 동의서 1부
 - 5-4.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부. 끝.
 6. 코로나-19 관련 자료
 - 6-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1부
 - 6-2. 자가격리자 신청서(서식) 1부
 - 6-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1부
 - 6-4.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1부. 끝.

▣ 일반소방(남)

▣ 경상남도

11110006	11110008	11110015	11110027	11110037
11110039	11110058	11110062	11110065	11110068
11110071	11110072	11110085	11110087	11110094
11110099	11110101	11110109	11110111	11110120
11110127	11110130	11110138	11110146	11110147
11110158	11110159	11110161	11110163	11110164
11110167	11110169	11110177	11110179	11110186
11110190	11110192	11110194	11110199	11110203
11110214	11110230	11110239	11110252	11110256
11110260	11110262	11110264	11110272	11110278
11110280	11110289	11110293	11110310	11110320
11110321	11110324	11110325	11110328	11110339
11110343	11110346	11110350	11110351	11110353
11110354	11110357	11110359	11110362	11110363
11110367	11110371	11110372	11110375	11110376
11110377	11110384	11110391	11110396	11110416
11110423	11110429	11110431	11110432	11110434
11110441	11110445	11110453	11110472	11110476
11110489	11110494	11110497	11110514	11110521
11110523	11110528	11110538	11110559	11110560
11110567	11110572	11110573	11110577	11110587
11110589	11110590	11110593	11110598	11110608
11110617	11110623	11110634	11110638	11110640
11110645	11110648	11110651	11110655	11110657
11110664	11110677	11110686	11110688	11110690
11110691	11110732	11110740	11110750	11110754
11110755	11110758	11110759	11110762	11110766
11110767	11110773	11110774	11110780	11110783
11110787	11110789	11110819	11110820	11110829
11110841	11110843	11110849	11110857	11110860
11110878	11110886	11110889	11110895	11110898
11110900	11110908	11110909	11110916	11110918

11110922	11110923	11110926	11110932	11110935
11110936	11110948	11110955	11110959	11110960
11110966	11110969	11110977	11110987	11110995
11110997	11111009	11111010	11111011	11111015
11111019	11111020	11111023	11111026	11111029
11111035	11111042	11111045	11111046	11111053
11111054	11111063	11111064	11111065	11111066
11111074	11111075	11111076	11111077	11111080
11111083	11111091	11111096	11111097	11111102
11111111	11111123	11111126	11111129	11111141
11111154	11111156	11111157	11111172	11111174
11111175	11111179	11111182	11111188	11111198
11111202	11111212	11111214	11111215	11111220
11111225	11111226	11111228	11111236	11111239
11111248	11111254	11111259	11111263	11111280
11111284	11111286	11111295	11111299	11111308
11111312	11111321	11111322	11111323	11111332
11111335	11111337	11111338	11111340	11111341
11111344	11111377	11111380	11111396	11111397
11111401	11111402	11111404	11111414	11111416
11111420	11111429	11111434	11111437	11111446
11111453	11111455	11111459	11111460	11111466
11111472	11111473	11111475	11111483	11111484
11111488	11111490	11111493	11111495	11111499
11111523	11111545	11111546	11111547	11111549
11111556	11111557	11111559	11111561	11111567
11111569	11111572	11111575	11111578	11111582
11111585	11111587	11111590	11111603	11111606
11111608	11111626	11111627	11111640	11111652
11111657	11111679	11111681	11111689	11111694
11111696	11111697	11111703	11111706	11111711
11111717	11111721	11111735	11111739	11111741
11111743	11111744	11111747	11111749	11111753
11111774	11111783	11111786	11111787	11111789
11111792	11111794	11111810	11111816	11111826
11111827	11111834	11111842	11111843	11111851
11111865	11111867	11111879	11111880	11111881

11111885	11111894	11111908	11111916	11111917
11111919	11111922	11111928	11111930	11111934
11111941	11111947	11111949	11111952	11111953
11111963	11111964	11111968	11111970	11111976
11111984	11111986	11111992	11111994	11111996
11112001	11112002	11112010	11112016	11112020
11112021	11112022	11112026	11112030	11112031
11112036	11112038	11112043	11112045	11112046
11112053	11112070	11112071	11112086	11112104

▣ 창원시

11120007	11120008	11120009	11120013	11120014
11120016	11120022	11120033	11120034	11120040
11120043	11120044	11120046	11120047	11120060
11120064	11120072	11120074	11120076	11120077
11120081	11120083	11120089	11120092	11120100
11120104	11120107	11120112	11120121	11120123
11120125	11120126	11120137	11120142	11120150
11120154	11120158	11120159	11120174	11120185
11120186	11120195	11120199	11120209	11120221
11120223	11120227	11120233	11120235	11120243
11120251	11120257	11120265	11120266	11120271
11120276	11120280	11120288	11120292	11120299
11120300	11120303	11120307	11120310	11120320
11120324	11120332	11120338		

▣ 일반소방(여)

▣ 경상남도

12110006	12110020	12110025	12110032	12110033
12110035	12110044	12110052	12110056	12110057
12110060	12110067	12110072	12110080	12110113
12110116	12110130	12110133	12110137	12110144
12110162	12110187	12110195	12110197	12110218
12110233	12110238	12110248	12110255	12110264

▣ 창원시

12120001	12120003	12120006	12120008	12120013
----------	----------	----------	----------	----------

12120022 12120023 12120028

▣ 구조(남)

▣ 경상남도

13110008	13110009	13110010	13110014	13110016
13110017	13110024	13110027	13110029	13110033
13110034	13110039	13110041	13110044	13110048
13110051	13110052	13110061	13110071	13110072
13110077	13110081	13110084	13110090	13110091

▣ 창원시

13120005	13120009	13120011	13120012	13120013
13120015	13120018	13120019	13120020	13120025
13120028	13120031	13120033	13120034	13120035
13120047	13120049	13120050	13120051	13120052
13120058	13120061	13120064	13120065	13120066
13120067	13120069	13120072	13120073	13120075
13120076				

▣ 구급(남)

▣ 경상남도

14110004	14110008	14110009	14110011	14110013
14110014	14110016	14110019	14110020	14110023
14110031	14110033	14110036	14110037	14110041
14110042	14110045	14110048	14110049	14110051
14110058	14110059	14110060	14110061	14110062
14110064	14110066	14110067	14110078	14110079
14110081	14110083	14110088	14110090	14110095
14110103	14110108	14110121	14110124	14110125
14110126	14110129	14110132	14110140	14110141
14110145	14110149	14110152	14110154	14110155
14110156	14110161	14110162	14110165	14110166
14110172	14110173	14110176	14110183	14110186
14110188	14110192	14110193	14110194	14110195
14110197	14110201	14110206	14110214	14110216
14110217	14110226	14110228	14110232	14110237
14110240	14110242	14110243	14110246	14110247

14110248	14110249	14110250	14110251	14110252
14110253	14110258	14110259	14110261	14110262
14110264	14110265	14110268	14110271	14110273
14110274	14110277			

▣ 창원시

14120001	14120002	14120006	14120007	14120009
14120011	14120012	14120013	14120018	14120020
14120021	14120024	14120026	14120028	14120030
14120031	14120035	14120039	14120040	14120041
14120042	14120045			

▣ 구급(여)

▣ 경상남도

15110002	15110020	15110049	15110052	15110061
15110078	15110083	15110097	15110105	15110111
15110170	15110179	15110180	15110182	15110189
15110193	15110196	15110197	15110198	15110200
15110204	15110208	15110213	15110241	

▣ 창원시

15120005	15120006	15120012	15120034	
----------	----------	----------	----------	--

▣ 소방관련학과(남)

▣ 경상남도

16110002	16110004	16110012	16110029	16110040
16110046	16110052	16110060	16110063	16110069
16110071	16110099	16110100	16110102	16110111
16110136	16110137	16110138	16110154	16110161
16110171	16110182	16110184	16110194	16110202
16110216	16110220	16110221	16110222	16110232
16110238	16110239	16110248	16110260	16110268
16110269	16110270	16110276	16110291	16110293
16110295	16110301			

▣ 창원시

16120006	16120007	16120012	16120016	16120020
----------	----------	----------	----------	----------

16120021 16120026 16120030

▣ 소방관련학과(여)

▣ 경상남도

17110005 17110009 17110010 17110019 17110023
17110026 17110027 17110031 17110046 17110050
17110051

▣ 창원시

17120001 17120004

▣ 응급구조학과(남)

▣ 경상남도

18110001 18110003 18110007 18110015 18110023
18110026 18110035 18110036 18110038 18110046
18110049 18110050 18110051 18110053 18110054
18110055 18110057 18110060 18110067 18110072
18110073 18110075 18110078 18110079 18110081
18110082 18110083 18110087 18110091 18110092
18110098 18110099 18110100 18110102 18110103
18110106 18110107 18110108 18110109 18110112
18110114 18110115 18110117

▣ 창원시

18120002 18120003 18120005 18120010 18120011

▣ 응급구조학과(여)

▣ 경상남도

19110001 19110009 19110019 19110020 19110033
19110036 19110037 19110038 19110039 19110040
19110043 19110047 19110048

▣ 창원시

19120002 19120003

▣ 의무소방전역(남)

▣ 경상남도

20110001	20110009	20110016	20110018	20110026
20110036	20110038	20110039	20110040	20110042
20110043	20110045	20110049	20110051	20110052
20110053	20110055	20110062	20110063	20110067
20110068	20110071	20110072	20110075	20110080
20110082	20110084	20110094	20110097	20110099
20110106	20110108	20110109	20110110	20110113
20110116	20110117	20110118	20110122	20110125
20110127	20110137	20110146	20110147	20110150
20110151	20110157	20110166	20110172	20110177
20110181	20110184	20110190	20110193	

▣ 건축

▣ 경상남도

24110006	24110008	24110010	24110012	24110015
----------	----------	----------	----------	----------

▣ 창원시

24120006	24120007	24120011	24120013	24120014
24120015				

▣ 언론공보

▣ 경상남도

26110002	26110003			
----------	----------	--	--	--

▣ 선박항해사

▣ 창원시

27120003				
----------	--	--	--	--

▣ 선박기관사

▣ 창원시

28120005	28120012	28120014	28120019	28120020
----------	----------	----------	----------	----------

붙임2 체력시험 장소

□ 체력시험장 위치도 (김해체육관)

○ 경남 김해시 가야로 245(구산동 660)

☎ 055-320-04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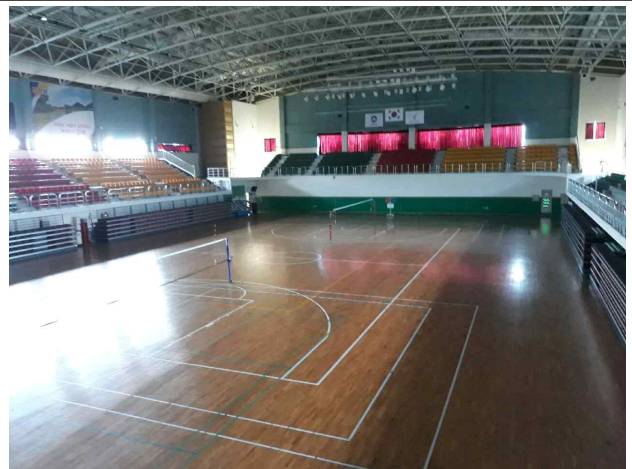


□ 체력시험장 전경

외부 전경



내부 전경



붙임3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별표 7] <개정 2017. 7. 26.>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종목 및 평가점수 (제23조의2 관련)

종 목	성별	평 가 점 수									
		1	2	3	4	5	6	7	8	9	10
악력 (kg)	남	45.3~ 48.0	48.1~ 50.0	50.1~ 51.5	51.6~ 52.8	52.9~ 54.1	54.2~ 55.4	55.5~ 56.7	56.8~ 58.0	58.1~ 59.9	60.0 이상
	여	27.6~ 28.9	29.0~ 30.2	30.3~ 31.1	31.2~ 31.9	32.0~ 32.9	33.0~ 33.7	33.8~ 34.6	34.7~ 35.7	35.8~ 36.9	37.0 이상
배근력 (kg)	남	147~ 153	154~ 158	159~ 165	166~ 169	170~ 173	174~ 178	179~ 185	186~ 194	195~ 205	206 이상
	여	85~ 91	92~ 95	96~ 98	99~ 101	102~ 104	105~ 107	108~ 110	111~ 114	115~ 120	121 이상
앞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cm)	남	16.1~ 17.3	17.4~ 18.3	18.4~ 19.8	19.9~ 20.6	20.7~ 21.6	21.7~ 22.4	22.5~ 23.2	23.3~ 24.2	24.3~ 25.7	25.8 이상
	여	19.5~ 20.6	20.7~ 21.6	21.7~ 22.6	22.7~ 23.4	23.5~ 24.8	24.9~ 25.4	25.5~ 26.1	26.2~ 26.7	26.8~ 27.9	28.0 이상
제자리 멀리 뛰기 (cm)	남	223~ 231	232~ 236	237~ 239	240~ 242	243~ 245	246~ 249	250~ 254	255~ 257	258~ 262	263 이상
	여	160~ 164	165~ 168	169~ 172	173~ 176	177~ 180	181~ 184	185~ 188	189~ 193	194~ 198	199 이상
윗몸 일으 키기 (회/분)	남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이상
	여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이상
왕복 오래 달리기 (회)	남	57~ 59	60~ 61	62~ 63	64~ 67	68~ 71	72~ 74	75	76	77	78 이상
	여	28	29~ 30	31	32~ 33	34~ 36	37~ 39	40	41	42	43 이상

비고

1. 「소방공무원임용령」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총점 60점 중 3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각 종목별 측정 방법 등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붙임4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측정방법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규칙 제7조)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악 력</p> <p>(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스메들리(smedley)식 악력계 ○ 측정 단위 : kg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측정 방법 : 똑바로 선채로 양발을 적당히 벌려서 기립자세를 취하고 손가락의 제 2관절이 직각이 되도록 악력계를 잡은 다음 폭을 조절해 다시 잡고 좌, 우 교대로 2회씩 측정하여 가장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배 근 력</p> <p>(k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배근력계 ○ 측정 단위 : kg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 ○ 측정 방법 : 양발을 15cm 정도 벌린 자세로 배근력계 위에 올라서서 상체를 앞으로 약간 기울여 배근력계 손잡이를 잡은 후 배근력계와 상체의 각도가 30°가 되도록 배근력계 손잡이의 높이를 쇠줄로 조절한다. 준비가 되면 전력을 다해 몸을 일으킴으로써 배근력을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p> <p>(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측정대(전자식 측정기 가능), 매트 1개 ○ 측정 단위 : cm ※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자는 신을 벗고 양 발바닥이 측정기구의 수직면에 완전히 닿도록 하여 무릎을 펴고 바르게 앉는다. 양발 사이의 넓이는 5cm를 넘지 않게 한다. - 양 손바닥은 곧게 펴고 왼손바닥을 오른손 등위에 올려 겹치게 하여 준비 자세를 취한다. - '시작' 구호에 따라 상체를 천천히 굽히면서 측정기구의 눈금 아래로 손을 뺀친다. - 보조원은 피검자가 윗몸을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이 굽혀지지 않도록 피검자의 무릎을 가볍게 눌러준다. - 계측원은 피검자의 손가락 끝이 3초 정도 멈춘 지점의 막대자 눈금을 읽어서 기록한다. -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 유의사항 : 허리의 반동을 이용하거나 갑작스럽게 상체를 굽혀 손을 뺐혔을 경우 또는 피검자가 앞으로 굽힐 때 무릎을 굽혔을 경우 재검사를 실시한다.

종 목	측 정 방 법 등
<p>제자리 멀리뛰기 (c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구름판 및 모래터(구름판 위치와 같은 높이로 모래를 정리) 또는 전자식 제자리 멀리뛰기 측정판 ○ 측정 기록 : cm ※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버림 ○ 측정 방법 : 발 구름판을 넘지 않도록 서서 팔이나 몸, 다리의 반동을 이용하여 뛰며, 발 구름선에서 가장 가까운 착지점(신체의 어느 한 부분)까지 거리를 구름선과 직각으로 측정한다. 2회 실시하여 좋은 기록을 선택한다.
<p>윗몸 일으키기 (회/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 : 매트(윗몸일으키기대, 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 측정 기록 : 회 ○ 측정 방법 : 양발을 3cm정도 벌리고 무릎을 직각으로 굽혀 세우며 양손은 교차해서 가슴에 대고 손끝이 어깨를 향하게 하여 등을 매트에 대고 누워 상체를 90° 이상 일으킨다. 1분 이내에 실시한 횟수를 측정한다.
<p>왕복오래 달리기 (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측정 장비(전자식 측정기 사용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소 길이 20m, 1인당 폭 1m 이상 되는 평평하고 미끄럽지 않은 공간 - 음량이 적절한 CD 플레이어 또는 카세트플레이어 - 점증속도에 따라 울리는 신호음이 녹음된 CD 또는 오디오카세트 - 녹음 CD : 별도 ○ 측정 기록 : 단위(회) ○ 측정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m코스의 양쪽 끝선에 테이프나 분필로 선을 긋는다. - 출발신호원의 '출발' 신호에 맞춰서 출발한다. - 먼저 도착한 피검자는 출발자의 '출발' 신호가 다시 울릴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신호가 울리면 다시 반대쪽 라인 끝을 향해 달린다. - 매 분마다 점점 빨라지도록 정해진 속도에 맞추어 20m 거리를 가능한 오래 왕복하여 달린다. - 왕복하는 동안 정해진 주기에 따라 속도가 빨라진다. - 동시에 출발한 피검자가 신호음이 울릴 때까지 라인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검사는 종료되고 이때까지 달린 20m 거리의 횟수를 기록한다.

비 고 :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항으로 측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왕복오래달리기 종목의 경우 실수로 넘어진 경우 포함) 그 해당 종목에 한하여 재 측정 기회를 추가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 도핑테스트 시행안내

- 체력시험의 공정성을 확보를 위해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지약물의 복용 등을 금지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도핑테스트)를 실시 할 수 있습니다.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고시(인사혁신처 고시 제2019-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약물 및 방법은 금지 됩니다.

□ 테스트 대상자 선정방식

- 검사는 스크리닝 검사에서 양성반응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거나 무작위로 선정 할 수 있습니다.

□ 테스트 절차 등 안내

- 채취된 소변 시료(A,B)는 곧바로 분석기관으로 전달되며, 전달된 시료 중 A시료가 분석되며, B 시료는 냉장보관 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는 본시험의 시행기관으로 통보됩니다.
- A시료의 분석결과가 비정상분석결과(양성)로 나온 경우, 해당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를 통보 받은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치료목적 사용면책 등의 의견을 제출하거나, B시료의 분석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관계 전문가 3인 이상을 포함한 치료목적사용면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하게 됩니다.
- B시료 분석을 요청 할 경우, 당사자 혹은 대리인이 분석과정에 참관할 수 있으며, 분석결과가 비 정상 분석적임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음성으로 최종판단 되나, B시료의 분석결과 역시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불합격 결정을 내립니다.
- 불합격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는 행정심판, 소송 등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 신청 안내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이 요구되는 의학적 상태에 있는 경우 응시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치료목적사용면책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비정상분석결과(양성)가 나온 경우, 구비서류를 갖추어 별도의 지정 일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치료목적사용면책은 다음의 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승인합니다.
 - 응시자의 급성 또는 만성 의 의료적 상태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금지약물이나 금지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응시자가 건강상 심각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예상한다.**
 - 금지약물 또는 금지방법의 치료목적의 사용에 따른 합법적인 치료로 인해 정상적인 건강상태로 되돌아갔을 때 예상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추가적인 운동능력 향상효과가 없어야 한다.**
 - **금지약물과 금지방법 사용 이외의 다른 합당한 대체 치료가 없어야 한다.**

□ 기타 유의사항

- 응시자는 본인의 건강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여야 합니다.
- 모든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력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는 도핑테스트 결과, 비정상분석(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소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시험 및 그 밖의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에 대해 응시자격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

붙임 5-2 공무원 임용을 위한 체력시험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I. 금지약물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1. 동화작용제 : 총 7종 및 그 대사물질¹⁾

가.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AAS)

- ① 외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 스테로이드(Exogenous AAS)
 - ▶drostanolone ▶methenolone
 - ▶methasterone(17β-hydroxy-2α,17α-dimethyl-5α-androstan-3-one)
 - ▶stanozolol
 - ▶1-testosterone(17β-hydroxy-5α-androst-1-en-3-one)
- ② 외인성으로 투여된 내인성 동화작용남성호르몬스테로이드(Endogenous AAS)
 - ▶testosterone

나. 기타 동화작용제 : Clenbuterol

2. 이뇨제 : 총 3종

- ▶hydrochlorothiazide ▶chlorothiazide ▶furosemide

3. 흥분제 : 총 3종

- ▶methylhexaneamine(dimethylpentylamine)
- ▶methylephedrine ▶ephedrine

※ methylephedrine과 ephedrine은 소변에 밀리리터당 10마이크로그램보다 많을 경우 금지된다.

4. 마약류 : 총 11종

- ▶Buprenorphine ▶dextromoramide ▶diamorphine(heroin)
- ▶fentanyl 및 유도체 ▶hydromorphone ▶methadone
- ▶morphine ▶oxycodone ▶oxymorphone
- ▶pentazocine ▶pethidine

II. 금지방법

- 「소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금지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도핑검사과정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과 유효성을 변조하거나 변조를 시도하는 행위(소변 바꿔치기 및/또는 섞기, 이와 유사한 방법 등을 포함한다.)

1) 생물학적 변환 과정을 통하여 생성된 모든 물질

붙임 5-4 응시자 치료목적사용 면책신청서

1. 응시자 인적사항

1. 성 명		2. 성 별	남 <input type="checkbox"/> , 여 <input type="checkbox"/>
3. 생년월일		4. 응시번호	
5. 핸드폰		6. 이메일	

2. 의료정보

1) 충분한 의료정보를 포함한 진단 소견
2) 사용 허가된 의약품으로도 치료 가능한 경우, 금지약품을 처방한 임상의학 적 정당성을 설명하십시오.

※ **진단 증빙자료(진단서, 처방전, 소견서 등)를 첨부**하여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증빙자료에는 포괄적 병력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검사보고서, 검사실 조사 및 영상검사 결과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능한 경우 보고서 또는 편지의 원본에 대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증빙자료는 임상의학적 관점에서 극히 객관적이어야 하며, 만약 정확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 다른 독립된 의료진의 소견도 포함시킬 수 있다.

3. 세부 진료내용

금지약물	1회 사용량	사용방법	사용빈도
1.			
2.			
3.			

치료기간 duration of treatment	1회 <input type="checkbox"/> 응급 <input type="checkbox"/> 기간(주/월)_____
-------------------------------	---

4. 담당의사 서약

나는 위에서 언급한 치료와 관련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하였으며, 금지목록 이외의 대체약물 사용은 위 응시자의 의료 상황에서는 적절하지 않았음을 확인한다.

성명 : _____ 전공분야 : _____

주소 : _____

전화 : _____ 팩스 : _____ 이메일 : _____

서명 : _____ 날짜 : _____

5. 응시자 서약

본인, _____는(은) 응시자 인적사항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인 사혁신처에서 고시한 금지약물과 방법의 사용 승인을 요청한다. 나는 나의 의학정보가 시험실시기관, 시료분석기관 및 기타 시험관련 기관에 제공되는 것을 허락한다. 나의 의학정보가 위의 기관에 제공되는 것에 반대한다면 담당의사와 시험실시기관에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

서명 : _____ 날짜 : _____

부모/보호자 서명 : _____ 날짜 : _____

(응시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장애로 인하여 서명이 불가능 할 때에는 부모나 보호자가 응시자와 함께 또는 응시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 구비서류가 완료되지 않은 신청서에 대해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완료 후 재 제출해야한다.
서류 접수 후 사본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붙임 6-1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자 유의사항 안내문

▼ 수험생은 시험장 출입 전 반드시 손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후, 발열검사를 받아야 하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모두 가릴 것)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자는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거나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분실 및 사용 중 훼손 등에 대비하여 마스크 여분 소지 권장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방역담당관에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실 안·밖에서 불필요한 대화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간 외에도 다른 수험생과 1.5m 이상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은 수시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소독제를 사용하여 소독하시기 바랍니다.

▼ 수험생 개인이 사용한 휴지, 마스크 등은 시험장에 버리지 말고, 가방에 넣어 다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 시험시작 후 시험감독관이 실시하는 본인 확인 시에는 마스크를 잠깐 내리고 본인여부 확인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은 시험 시행일로부터 14일간 발열, 호흡기 증상 등을 모니터링하여 증상 발생 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 당일 외부인의 시험장 출입을 전면통제합니다.

※ 확진환자는 시험응시가 불가합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제3항에 의거 격리대상자 등은 지정된 시험일에 시험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자가격리자(최근 14일 이전 해외입국자 포함) → 별도 시험일 응시 → 응시자에게 별도 통보
예비 시험일 등

붙임 6-2 자가격리자 신청서(서식)

**2020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시험
자 가 격 리 자 응 시 신 청 서**

성 명 : _____

생년월일 : _____

응시번호 : _____

지원사항(응시기관/분야) : _____

주 소 : _____

※ 시험 당일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소 기재

연 락 처

○ 본 인 : _____

○ 예비 1 : _____

○ 예비 2 : _____

상기 본인은 자가격리자로서, 경상남도가 정하는 별도 시험일에 시험
응시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0. . .

신 청 인 _____ (서명)

경상남도지사

붙임 6-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수칙



꼭! 기억해야 할 행동수칙

국민 예방수칙



흐르는 물에 비누로
꼼꼼하게 손씻기



가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특히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외출 시 꼭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피하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하기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하기

유증상자* 예방수칙

* 발열, 호흡기 증상(가침, 목아픔 등) 이 나타난 사람



통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외출 자제하기



3~4일 경과를 관찰하며
집에서 충분히 휴식 취하기



38°C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질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관할보건소 문의 및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후 진료받기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및 자차 이용하기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여부 알리기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에서는

외출,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 철저히 따르기

붙임 6-4 감염병 예방수칙(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



**비누로 꼼꼼하게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6단계]



**올바른 손씻기와 기침예절로
많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올바른 기침예절]



발행일 2019.11.5.